3.4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는 신청서와 함께 현금 또는 통장으로 수납한다.

1)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 업무		인증수수료 납부 통장	
본사(천안)	농협	351-1562-6265-13	(주)
강원지역	농협	351-5562-6265-93	비씨에스코리
전남지역	농협	351-2562-6265-53	Oŀ

- 2)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1) 인증심사관리비는 인증기관의 운영비(인건비, 인증관리 등 운영비), 사후관리비(생산계획변경, 출장비)로 구분된다.
 - (2) 인증수수료 중 인증심사관리비는 생산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인증신청 자 취하, 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서 3.4.3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시 에 인증심사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3) 인증심사와 관련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분석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4) 수수료 관련 안내. 청구. 징수 및 영수증 발급은 행정팀이 담당한다.

3.4.1 인증신청비

- 1) 신규 및 갱신 인증신청: 1건당 50,000원
-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1건당 50.000원

3.4.2 출장비

- 1)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2호)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1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도 있도록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 3) 1인 심사원의 1일 출장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철도	선박	하 아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비
	운임	운임	이 이	운임	(1일당)	(1일당)	(1일당)
금액/1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50,000)	20,000

※ 단,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20,000원)를 청구한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는 5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 일비, 운임,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다.

- 4) 운임의 경우는 인증기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산간오지, 도서 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 출장비에 대한 계산은 인증신청인의 서류가 접수되는 일자에 유류비를 기분으로 하며, 거리는 면/읍/동 단위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고속도로 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통행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추후 첨부해야 한다.
 - (2) 연료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인증신청지를 관할하는 지역별 사무소)와 출장지

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 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인터넷 지도 서비스)을 활용한다.
-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u>연비</u> (km/ℓ)	10.06	10.16	<u>7.87</u>

- * 평균차령('03년)을 고려하여 '03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5)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 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국가등급	일비(1인당)	식비(1인당)	숙박비(1야당)
			가등급	30	81	176
2등 정액 2등 정액	o드 전에	AI LII	나등급	30	59	137
	실비	다등급	30	44	106	
			라등급	30	37	81

- 6) 일반기준 및 심사원 추가편성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신청인과의 현장심사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현장심사 운영계획, 과거인증 및 사후관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원수를 증감 편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인에게 증감 사유를 통보하고 소요되는 출장비용에 대한 안내 후 출장비 용을 청구한다.
- 7) 출장비는 출장인원 축소, 현장 심사 전 인증신청 취하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 교부 시 반환하여야 한다.
- 8) 인증규모별 표본농가의 수에 따른 심사원의 수와 출장기간은 다음과 같다.

작목반규모	~15명	16~24명	25~35명	구성원이 35명이상 이거나 생산현장의 규모와
심사반 편성	2인2일	2인3일	2인4일	- 분산정도, 현장상황에 따라 인증팀장의 재량으로로 심사원수와 심사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9) 동일 사업자, 동일 지역, 동일에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 인증팀장(관할 사무소장)의 재량으로 출장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비고 [국가 등급 산정]

등급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등급	동경, 뉴욕, 런던	t, 로스엔젤레스, 모스 ⁼	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성	싱턴, 파리, 홍콩
나등급	타이완, 베이징, 싱가 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 탄, 파푸아 뉴기니		그리스, 네델란드, 노 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 스, 스페인, 아이슬란	국, 리비아, 수단, 남 수단 아랍에미레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

			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
			포르투갈, 프랑스, 핀	주공화국, 쿠웨이트
			란드, 헝가리	
다등급	뉴질랜드, 마셀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 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 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 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바부 다, 우루과이, 첼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 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 아, 체코, 폴란드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라등급	네팔, 라오스, 미크로 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 코비나, 알바니아, 에스 토니아, 크로아티아	기니, 나미비아, 레바 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 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10) 출장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3.4.3 인증기관 심사관리비

- 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관리비를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2) 인증심사관리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관리비를 참고할 수 있다.
- 3) 인증심사관리비 단가는 기준이며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심사관리비(국내기준)

(단위: 원)

	구분	내 역	비 용	비고
	유기농산물	서류 심사비	100,000	
농 림		현장 심사비	100,000	농가별 징수
산	무농약농산물	보고서 작성비	50,000	추가비용 징수
물		생산과정 조사비	50,000	(필지 산재)

		합 계	300,000+a(추가비용)	
	구분	내 역	비 용	비고
		서류 심사비	150,000	
축	유기축산물	현장 심사비	200,000) 농가별 징수
· 산		보고서 작성비	100,000	추가비용 징수
물	무항생제	생산과정 조사비	150,000	(초과 두수)
	축산물	합계	600,000+a(추기비용)	
				•
	구분	내 역	비 용	비고
	취급자	서류 심사비	220,000	
사		현장 심사비	330,000	_ _ 업체별 징수
겁	유기가공식품	보고서 작성비	220,000	추가비용 징수
자	ШЛО	생산과정 조사비	110,000	
	비식용 유기가공식품	합 계	880,000+a(추기비용)	

- 1) ① 농림산물 농가별 징수하며 단체의 경우 (5~15농가는 10%, 16~30농가는 20%, 31농가 이상은 30% 할인, 단 전수심사의 경우 할 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농가수로 산정
- ② 농림산물인증 신청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관리비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 ③ 농림산물 10품목 초과 신청 시 1품목 당 1만원 추가 산정(단, 품목추가 비용은 일십만원 이상 산정할 수 없다.)
- 2) 축산물 : 인증건별 징수하며 단체의 경우 (600,000원) *농가수로 산정
- 3) 취급자/유기가공식품/비식용 유기가공식품 : 인증건별로 비용 징수
- ① 취급자/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관리비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 4) 인증품유효기간연장의 심사관리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추가금액>

- 1) 농림산물의 인증 신청필지가 시, 군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 당 100,000원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2) 농림산물 인증 신청면적이 3ha 초과일 경우 5원/㎡을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단. 임야의 경우 2원/㎡)
- 3) 축산의 경우
- ① 한우, 낙농, 사슴, 산양 : 기준 50두를 초과하는 경우 51두~100두까지 초과 두수당 10,000원, 101두부터 두당 1,000원의 추가비용 을 산정하여 징수하다.
- ② 돼지: 1,000두를 초과하는 경우 1001두~2,000두까지 두당 500원, 2001두부터 두당 50원의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③ 가금류: 기준 3만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마리수당 5원의 추가비용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④ 단, 개인의 경우 축산물 인증 심사관리비 산정 총액은 3,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5)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신청품목이 2품목 이상인 경우 1품목 추가 시 추가한 품목당 15만원을 추가 징수한다(단 추가할 품목이 동일유 형<대분류상>에 속하고 가공공정이 유사한 경우 품목추가 비용을 50% 경감할 수 있다)
- 6) 심사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2) 인증심사관리비(국외기준)

(단위: 원)

구분 내 역 비 용	고
------------	---

		서류 심사비	350,000		
사		현장 심사비	800,000	농가별 징수	
림 산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보고서 작성비	1,000,000	추가비용 징수
물		생산과정 조사비	350,000		
		합 계	2,500,000+a(추가비용)		
				•	
	구분	내 역	비용	비고	
		서류 심사비	350,000		
축		현장 심사비	800,000	농가별 징수	
산	유기축산물		보고서 작성비	1,000,000	추가비용 징수
물			생산과정 조사비	350,000	
		합 계	2,500,000+a(추기비용)		
	구분	내 역	비 용	비고	
	취급자	서류 심사비	350,000		
사		현장 심사비	800,000	업체별 징수	
업	유기가공식품	보고서 작성비	1,000,000	추가비용 징수	
자	비식용	생산과정 조사비	350,000		
	유기가공식품	합 계	2,500,000+a(추기비용)		

네고>

- 1) 농림산물/축산물: 농가별 징수
- 2) 취급자/유기가공식품/비식용 유기가공식품: 업체별로 비용 징수

〈추가금액〉

1)추가금액의 경우 생산과정조사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심사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4)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 (1) 구성원이 취하하는 경우 인증심사관리비는 사업계획서 3.4.4항에 반환규정을 따른다.
- (2)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는 인증심사관리비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

3.4.4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 반환

1) 인증신청이 접수 된 후 현장심사 전에 신청을 취하 또는 영농관련 등 자료에서 부적합되어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서류심사비를 제외한 현장 심사비, 보고서 작성비, 생산과정 조사비)는

- 전액 반환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한다. (단, 서류심사 전에는 전액반환)
- 2) 인증신청인에게 현장심사 계획을 통보한 후 현장심사 출장인원이 축소 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출장인원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납입한 인증심사관리비를 반환한다.
 - (1) 인증취득 후 인증 취소 시 반환 없음
 - (2) 현장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된 경우 또는 현장심사 후 인증취하 시 인증심 사관리비(서류심사비, 현장 심사비, 보고서 작성비를 제외한 생산과정 조사비) 반환
 - (3) 신청인의 납부 오류 및 규정보다 초과 청구된 경우 해당되는 금액
 - (4) 기타 신청인의 환불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되는 금액
 - (5) 인증기관의 반납,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등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 된 경우 인증심사관리비(서류심사비, 현장 심사비, 보고서 작성비를 제외한 생산과정 조사비)는 사유가 발생된 시점과 잔효 인증유효기간 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한 비용을 해당 농가에게 반환한다. (단, 승계의 경우는 승계한 인증기관에 반환한다.)

비고	잔효 인증유효기간			
U1 1/2	75% 이상	75%미만50%이상	50%미만~25%이상	25% 미만
반환 비율	100%	50%	25%	반환 없음.